

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& WELFARE	보도자료	자료배포일	7월 20일	배 수	총 배
		보도일시	7월 21일 석간		
	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	과 장	최영현	☎	504-6235
		사 무 관	임을기	E-mail	eklim@mohw.go.kr

고령친화산업(실버산업) 활성화 정부 본격 추진

< 주요 내용 >

□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「(가칭)고령친화산업지원법」을 마련하여 7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7월 22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□ 동 법의 제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.

<고령친화산업 시장전망 >

○ 수요측면 : 2008년경 개화되어 2010년 ~ 2025년 급속성장 전망

※ 2008년 : 고령자 비중이 10% 초과, 전국민연금제도 급여 지급 시작
2010년 :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시점

○ 공급측면에서 수요를 체감하지 못하여 시장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

□ 동 법은 금년 5월 국회를 통과한 “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”에 근거한 하위법률로 향후 저출산·고령사회대책중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다.

□ 「고령친화산업지원법(안)」은 총4장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진체계 (안 제2조, 제5조~6조)
- 범정부적으로 집중지원 할 고령친화산업 8대 산업분야 제시

-고령친화산업을 산자부 등 11개 부처가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할
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“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”에 포함

○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(안 제7조~9조)

-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·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
-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·학·연 협동연구 추진
-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·외 시장경쟁력 강화

※ 표준화 현황 : 보청기 등 16개 품목, 고령자 배려 설계지침 9건 등 총 64건으로 미비한 실정

○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 (안 제11조~제12조)

-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제공, 컨설팅, 표준화 연구 등 고령친화산업체 실질적 지원업무 수행

○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(안 제14조~제18조)

-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·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수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의욕 제고와 고령소비자의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선택 기회 제공
-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제품 서비스 우선구매, 기술개발 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 도모

□ 동 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.

○ 산업체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체계적 지원정책 추진으로 시장 진입에 따른 어려움의 적극적 해소 가능

-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, 전문인력 양성, R&D 지원 등으로 산업체의 국내·외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

- 고령소비자의 경우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표시제도 도입 및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으로 **안심하고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 선택기회가 확대될 것임**
- 향후 「고령친화산업지원법」은 관계부처 협의(7.13~7.21), 입법예고(7.22~8.5), 국무회의심의(10월)를 거쳐 금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
- 참고자료
 - 1.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및 법안 주요내용
 - 2. 고령친화산업 부처별 추진현황
 - 3.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사례

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법률안 (정부안)

1.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

-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악화, 경제 저성장과 같이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기도 함.
- 급팽창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
- 지금이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할 시기이며, 수요·공급자가 주로 사회·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정부지원이 시급함
- 고령친화산업은 2008년경 개화되어 2010년~2025년 급속 성장 전망
 - ※ 2008년 : 고령자 비중이 10% 초과, 전국민연금제도 급여 지급
 - 2010년 :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시점
-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
 -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다양한 상품 및 신서비스 확대 추진

<일본사례>

- 실버마켓 규모 : 39조엔('01) → 155조엔('25), 4배 성장 전망
- 정부가 견인차 역할을 하여 실버산업 육성을 포함한 노인복지 로드맵 마련 (“골드플랜”: '90~'99→신골드플랜: '95→골드플랜21: '00~'04) 계속적
- 골드플랜으로 노인복지와 “실버산업”육성 동시 추진
- 후생성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 설치('85) 및 사단법인 「실버서비스진흥회」 설립('87)
- 복지용구실용화 개발비용 지원 ('93, 연간 1,000만엔 범위내에서 3년간)
- 2000.4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특히 요양관련 산업 급성장 추세

□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진전략

- 정부는 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, 고용창출 효과, 선진국 고령소비자의 소비패턴을 고려, 유망 고령친화산업으로 8대산업 도출
- 8대 산업분야별로 국제경쟁력, 시장매력도, 공공성을 기준으로 19개 전략품목을 선정, 집중지원 할 계획임

부문	19개 전략품목
요양산업	재가요양서비스
기기산업	재택/원격진단/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, 한방의료기기, 간호지원및살내외이동지원시스템
정보산업	홈케어, 정보통신보조기기, 노인용컨텐츠개발
여가산업	고령친화휴양단지
금융산업	역모기지 제도, 자산관리서비스
주택산업	고령자용주택개조,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
한방산업	한방보건관광,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, 노인용한방화장품, 노인성질환한약제재개발
농업	고령친화귀농교육,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, 은퇴농장

※ '05.1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, “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”중

□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대효과

-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
 - 시장규모 확대 : 6.4조원('02) → 29조원('10) → 108조원('20)
 - 취업유발효과 : 17만명('02) → 38만명('10) → 62만명('20)
- 중소기업 적합산업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기여
- 고령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공급과 안전표준규격 제정 등을 통해 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

2. 「고령친화산업지원법」 제정 추진경과

- 「고령친화산업지원법」 제정 방안 결정 ('05.1.21,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보고회의시)
 -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중의 하나로 「고령친화산업지원법」을 산업자원부와 공동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
- 고령친화산업 지원 관련 국내·외 법률 및 제도조사 (2월~5월)
 - 미국 등 10개 선진국가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
※일본 “복지용구연구개발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”, “고령자주거안정확보에관한법률”
- 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 마련 (3월~6월초)
 - 민간전문가, 산업체, 관련부처 실무담당자가 참여한 4차례 협의회 개최하여 마련
- 법안에 대해 건교부 등 7개부처 사전 의견조회 실시 (6.23~7.1)

3. 법안 주요내용

가.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진체계

-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해당분야 규정 (안 제2조)
 -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·개발·제조·가공·제공·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8대 산업분야 포함
※ 영양서비스, 의료기기, 정보, 여가, 금융, 주택, 한방산업, 농업 등 8대산업과 식품·장묘·교육·교통 등 추가 확대할 산업의 근거규정 마련
-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~6조)
 - 산자부 등 11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정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추진
※ 앞으로 “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”에 포함하여 수립할 방안임

나.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

○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(안 제7조)

- 간병 등 요양서비스, 주택 개조·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으로 인적인프라 확충

○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추진 및 산·학·연 협동연구 촉진 (안 제8조)

-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및 제품화 촉진을 위한 산·학·연 협동연구에 우선 지원

○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(안 제9조)

- 보청기 등 16개 품목과 고령자 배려 설계지침 9건에 한정되어 있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적극 추진
-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·외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

다.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

○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·지정 및 필요경비의 지원 (안 제11조)

- 국내·외 시장동향 등 정보제공, 컨설팅, 표준화 연구 및 기반조성 사업 등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업무 수행

※지정대상기관 예시 : 한국전기연구원(의료기기), 한국보건산업진흥원(요양서비스, 주택, 복지용구),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(주택) 등

○ 고령친화산업 사업자단체 운영 (안 제12조)

- 사업자단체에 우수제품·우수사업자 지정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자 자율적인 품질향상 도모 및 고령소비자 보호기능 부여

※ 사업자단체 예시 : 사단법인 대한실버산업협회 (2004년 설립)

라.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

○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·표시제도 도입(안 제14조~제16조)

- 우수제품·우수사업자 지정 및 이를 알 수 있는 표시 부착으로 고령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등의 선택기회 제공

※ 일본 “실버마크”인증제도 실시 : '83년 시작하여 '03년 900개소 인정

- 인증분야 : 방문개호서비스,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사업, 유료노인홈 등

○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우선 지원 (안 제17조)

-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제품 서비스 우선구매, 기술개발 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제품 등의 품질향상 도모

4. 향후 추진계획

○ 금년 11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

- 관계부처 협의 (7.13~7.21), 입법예고 (7.22~8.5), 국무회의심의(10월) 예정

○ 8월 출범 예정인 복지부의 「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본부」 내 고령친화산업추진팀 구성·운영

- 복지부, 산자부, 건교부, 재경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

<고령친화산업 부처별 추진현황>

- 보건복지부 :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, e-health 표준화
- 재경부 및 금감위 : 역모기지제도 및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
- 산자부 :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(연 10억 지원) 및 충남고령친화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(3년간 52억원 지원)
- 문광부 : 여가문화지원센터 추진('06),
- 농림부 및 농진청: 은퇴농장 및 귀농교육, 장수마을 ('05년 100개소 시범운영, 총 44억원)

<참고자료>

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및 입법 사례

□ 일본

- 입법에 : “복지용구연구개발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”, “고령자주거안정확보에관한법률”
- 후생성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 설치('85) 및 사단법인 「실버서비스진흥회」 설립
- 「실버서비스진흥회」 에서 실버마크 인증제도 실시
 - ※ 1983년 시작, 2003년 현재 900개소 인정
- 복지용구실용화 개발비용 지원 ('98, 연간 1,000만엔 범위내에서 3년간)
- 2000.4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이후 요양관련 산업 급성장 추세

□ 덴마크 : 세계 최첨단의 보청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, 보청기 구매시 노인에게 금전적 지원

□ 미국

- 전동휠체어, 의수족 신체보조장치 등 다양한 노인용 복지용구·용품에 대하여 의료보험에서 80%이상 급여 지급
- 주거시설개선기금을 마련하여 주택진입 경사로 등 노인주거시설 개선시 금융지원

□ 프랑스

-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 및 주택보조금 지급
 - 배관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, 세입자에게는 월세 일부, 집주인에게 는 주택납입금의 일부를 주택보조금으로 보조

○ 부동산 역모기제도 활성화 : 수령금액의 과세비율을 연령에 따라 차등

※ 과세비율 : 50~59세 : 50%, 60~69세 : 40%, 70세이상 : 30%

<참고자료>

부처별 고령친화산업 지원 정책 추진현황

□ 보건복지부

- 「고령친화산업지원법」 제정 추진, 저출산·고령사회대책본부내 “고령친화산업추진팀”구성 (8월)
-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('05.7~'06.3)
- e-health 표준화 1단계 완료: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사용하는 의학용어등 표준정리
- 재택건강시스템 개발(연 7억원), 휴대형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(연 10억원) 지원

□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

-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,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추진

□ 산업자원부

-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(연 10억 지원), 충남 고령친화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('04~'07, 총 52억 지원)

□ 문화관광부

- 여가전문가 양성, 여가문화 확산 캠페인 “여가문화지원센터” 추진('06)

□ 농림부 및 농업진흥청

- 은퇴농장 설립
 - 사업지: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전·만봉 지구
 -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: '05~'07년 (3년간), 총 39억원(국비80%, 지방비 20%)
- 고령친화 귀농교육: 주말농장 및 전원영농 희망자 약 1천명 대상
-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

- '05년 100개소 시범육성 (총44억원), 향후 전국 800~1200개소 연차적 설치·운영
- 사업내용: 경제활동, 건강관리, 학습·사회활동, 환경정비

당정협의

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추진 등

2005. 7. 21(목)

보 건 복 지 부

- 목 차 -

I.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추진	1
II.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..	7
III. 국립대병원 주관부처 이관 추진상황	12

I.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추진

1.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

□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악화, 경제 저성장과 같이 위협요인이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기도 함.

○ 급팽창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 필요

□ 지금이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할 시기이며, 수요·공급자가 주로 사회·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정부지원 필요

○ 고령친화산업은 2008년경 개화되어 2010년~2025년 급속 성장 전망

※ 2008년 : 고령자 비중이 10% 초과, 완전노령연금 급여 본격 개시

2010년 :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시점

○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

-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다양한 상품 및 신서비스 확대

<일본사례>

- 실버마켓 규모 : 39조엔('01) → 155조엔('25), 4배 성장 전망
- 정부가 견인차 역할을 하여 실버산업 육성을 포함한 노인복지 로드맵 계속적 마련 ("골드플랜": '90~'99→신골드플랜: '95→골드플랜21: '00~'04)
 - 골드플랜으로 노인복지와 "실버산업"육성 동시 추진
 - 후생성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 설치('85) 및 사단법인 「실버서비스진흥회」 설립('87)
 - 2000.4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특히 요양관련 산업 급성장 추세

□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진전략

- 정부는 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, 고용창출 효과, 선진국 고령소비자의 소비패턴을 고려, 유망 고령친화산업으로 8대 산업 도출
- 산업부문별로 국제경쟁력, 시장매력도, 공공성을 기준으로 19개 전략품목을 선정, 집중지원 계획

부문	19개 전략품목
요양산업	재가요양서비스
기기산업	재택/원격진단/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, 한방의료기기,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
정보산업	홈케어, 정보통신보조기기, 노인용콘텐츠개발
여가산업	고령친화휴양단지
금융산업	역모기지 제도, 자산관리서비스
주택산업	고령자용주택개조,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
한방산업	한방보건관광,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, 노인용한방화장품,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
농업	고령친화귀농교육,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, 은퇴농장

□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대효과

-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
 - 시장규모 확대 : 6.4조원('02) → 29조원('10) → 108조원('20)
 - 취업유발효과 : 17만명('02) → 38만명('10) → 62만명('20)
- 중소기업 적합산업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기여
- 고령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공급과 안전표준 규격 제정 등을 통해 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

2. 「고령친화산업지원법」 제정 추진경과

- 「고령친화산업지원법」 제정 결정 ('05.1.21,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보고회의시)
 -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중의 하나로 「고령친화산업지원법」을 산업자원부와 공동입법 추진
- 고령친화산업 지원 관련 국내·외 법률 및 제도조사 (2월~5월)
 - 미국 등 10개 선진국가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
 - ※ 일본 “복지용구연구개발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”, “고령자주거안정확보에관한법률”
- 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 마련 (3월~6월초)
 - 민간전문가, 산업체, 관련부처 실무담당자가 참여한 4차례 협의회 개최하여 마련
- 법안에 대해 건교부 등 7개부처 사전 의견조회 실시 (6.23~7.1)

3. 법안 주요내용

□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진체계

-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해당분야 규정 (안 제2조)
 -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·개발·제조·가공·제공·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8대 산업분야 포함
 - ※ 요양서비스, 의료기기, 정보, 여가, 금융, 주택, 한방산업, 농업 등 8대 산업과 식품·장묘·교육·교통 등 추가 확대할 산업의 근거규정 마련

○ **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~6조)**

- 산자부 등 11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정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추진

※ 향후 “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”에 포함

□ **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**

○ **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(안 제7조)**

- 간병 등 요양서비스, 주택 개조·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으로 인적인프라 확충

○ **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추진 및 산·학·연 협동연구 촉진 (안 제8조)**

-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및 제품화 촉진을 위한 산·학·연 협동연구에 우선 지원

○ **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(안 제9조)**

- 보청기 등 16개 품목과 고령자 배려 설계지침 9건에 한정되어 있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적극 추진
-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·외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

□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

○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·지정 및 필요경비의 지원 (안 제11조)

- 국내·외 시장동향 등 정보제공, 컨설팅, 표준화 연구 및 기반 조성 사업 등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업무 수행

※ 지정대상기관 예시 : 한국전기연구원(의료기기), 한국보건산업진흥원(요양서비스, 주택, 복지용구),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(주택) 등

○ 고령친화산업 사업자단체 운영 (안 제12조)

- 사업자단체에 우수제품·우수사업자 지정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자 자율적인 품질향상 도모 및 고령소비자 보호기능 부여

※ 사업자단체 예시 : 사단법인 대한실버산업협회 (2004년 설립)

□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

○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·표시제도 도입(안 제14조~제16조)

- 우수제품·우수사업자 지정 및 이를 알 수 있는 표시 부착으로 고령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등의 선택기회 제공

※ 일본 “실버마크”인증제도 실시 : ‘83년 시작하여 ‘03년 900개소 인정
- 인증분야 : 방문개호서비스,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사업, 유료노인홈 등

○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우선 지원 (안 제17조)

-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제품 서비스 우선구매, 기술개발 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제품 등의 품질향상 도모

4. 향후 추진계획

- 금년 11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

- 관계부처 협의 (7.13~7.21), 입법예고 (7.22~8.5), 국무회의 심의(10월) 예정

- 8월 출범 예정인 복지부의 「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본부」 내
고령친화산업추진팀 구성·운영

- 복지부, 산자부, 건교부, 재경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

<고령친화산업 부처별 추진현황>

- 보건복지부 :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, e-health 표준화
- 재경부 및 금감위 : 역모기지제도 및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
- 산자부 :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(연 10억 지원) 및 충남고령친화 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(3년간 52억원 지원)
- 문광부 : 여가문화지원센터 추진('06),
- 농림부 및 농진청: 은퇴농장 및 귀농교육, 장수마을 ('05년 100개소 시범운영, 총 44억원)

II.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

1. 의료정책의 성과와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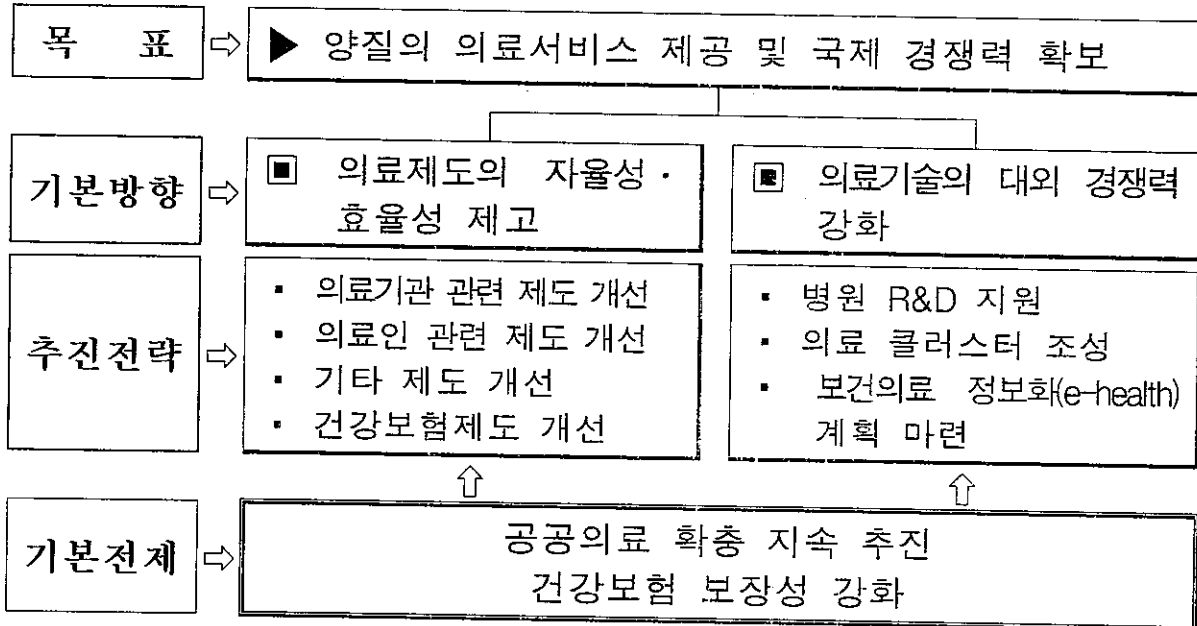
- 의료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력·시설 등의 성장위주정책과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
 -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 - ※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5.9%, 의료기술은 미국대비 80%수준 평가
- 의료시장의 글로벌화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, 의료의 산업적인 측면을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
 - 공공의료의 지속적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해결방안 모색

2. 추진경과

- 대통령 업무보고('05.3월)시 '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·관협의체 구성·운영계획' 보고
- 장관자문기구인 『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』 구성(5.13)
 - 기본방향 및 의료제도 개선과제(15개) 선정
 - e-Health 및 의료클러스터 육성방안 추진 협의
- 의료제도 개선과제중 단기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과제는 7월중 확정할 목표로 추진
 -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등 의료제도과제 7개
 -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등 건강보험과제 3개(이미 발표)
 - ※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하반기중에 검토하여 대안 마련계획

3. 중점추진과제

<추진 목표 및 전략>



□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

○ 의료기관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(30병상↓), 병원(30병상↑), 종합병원(100병상↑)으로 구분

- 종합병원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인정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수가에 가산율을 부여(의원 15%, 병원20%, 종합병원25%, 종합전문요양기관30%)

※ 병원 892개, 종합병원283개,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

○ 병원은 특정진료과목 중심으로,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대형화·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

-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이 필요

【일본사례】 : 90년대 2차례 의료법을 개정, 병상수 기준에서 전문병원·특수의료 등 기능중심병원으로 구분체계를 개선

- 종별구분을 4단계→3단계(의원, 병원, 종합병원)로 조정하고 병원의 다양한 기능을 종별구분에 추가
 - 전문병원·요양병원·재활병원 등을 종별구분에 포함
 - 종합전문병원은 교육기능 수행 등을 위한 적정기준 설정

□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

- 동일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설립주체(사회복지법인, 의료법인)에 따라 고유목적준비금 및 기부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차등 적용

구분	재단법인·의료법인	사회복지법인·학교법인
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	수익사업소득×50%	수익사업소득×100%
기부금 손금산입	기부금×5%	기부금×50%

- 중소기업기본법상 병원은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미만시에 적용,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미반영

※ 중소기업기본법상 전체업종은 평균96%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나, 병원은 73%만 적용

- 세제 합리화 추진방안(관계부처 협의 필요)
 - 의료법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50%→100%로 조정 검토
 -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: 기부금 5% → 50% 조정 검토
 -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분류기준을 200인 → 300인 이하로 조정

□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

- 치료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정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절차에 대한 의료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
- 신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결정기간의 장기화 및 시장 진입에 애로
- 신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절차에 대한 의료법상의 근거 규정 신설 추진
- 신의료기술을 전담평가하는 별도의 평가기구와 사무국 설치 및 운영체계 구축

□ 의료기관평가 통합운영

-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, 응급의료평가 등을 개별 법률에 의거 별도로 실시중
- 동일한 의료기관에 대한 중복평가 문제 발생
- 평가기관의 분산 및 평가요원의 임시구성 등으로 인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
- 각종 의료기관평가를 전담하는 독립 민간기구로 「의료기관평가원(가칭)」 설치 추진
- 의료기관평가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합하여 실시
- 임상수준의 질적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검토

□ 보건의료정보화(e-Health) 기반 마련

-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
 - 진료기록부를 전자건강기록(EHR;electronic health record) 형태로 생성·보관하는 추세
 - 개별 의료기관의 EHR을 타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
 -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 실시 및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
- 추진방안
 - 보건의료정보화와 관련하여 8개의 검토대상 과제 확정
 - 금년말까지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
 - 가칭 『보건의료정보화에 관한 법률』 제정 추진

Ⅲ. 국립대병원 주관부처 이관 추진상황

1. 추진경과

- '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(안)'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('05.5.11)
 -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정부정책 방향으로 결정
- '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' 공청회 개최('05.5.25)
- 복지부-국립대병원 기초실장 간담회(차관주재, '05.6.10)
 -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국립대병원의 연구·교육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정부방침 설명
- 공공보건의료확충 당정회의('05.6.13) : 이관 방침 확인
- 복지부장관-국립대병원장 간담회 개최('05.6.23)
 - 국립대병원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
- 복지부와 교육부 실무협의('05.6.30)
 - 이관 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·공포시에 관련 예산과 함께 복지부로 이관 등 논의

<국립대병원의 입장>

- 진료기능 강화와 연구·교육 기능 위축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
- 국가중앙의료원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휘·감독할 것이라는 우려
- 기금교수 정원 확보 등 교수 신분에 대한 불안감
- 감독부처 이원화로 의과대학과 이해관계 충돌시 업무추진 애로 우려

* 서울대병원의 경우,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등의 통합법률안 제출로 인하여 복지부 이관 반대 분위기 고조

2. 추진방향

인력양성은 교육부가 병원관리는 복지부로 관장하여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효과성을 제고

- 대표적인 공익병원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정립
 - 세계적 수준의 의료·교육·연구기능의 의료기관
 - 국가보건의료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
- 국립대병원의 자율성·전문성을 최대한 보장
 - 병원의 운영자율화를 위한 규제완화
 - 국립대병원이 추진하는 개혁조치 적극 지원
- 국립대병원의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
 - 광역별 특수진료센터의 설치, 지역보건인력의 교육총괄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의 성공모델로 발전
 - 교육·연구기능 발전을 위한 지원

3. 주요 추진할 내용

-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시스템 구축
 -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국립대 병원 전문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
 -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 체계를 확립하고,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총괄적 지원기능 수행

○ 국립대병원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

- 교육·연구 기능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
- 국립대병원이 희망하는 개혁조치를 보건복지부 이관시 지원
-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비전 아래 시설·인력의 확충, 장비 보강 등을 추진
-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

○ 국립대병원의 자율성·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

-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장의 책임 하에 경영자율성 보장
- 최고수준의 중심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첨단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
- 현행 사업비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, 재산권 관련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

4. 향후 추진일정

○ 관계부처 협의 : '05. 7

- 교육인적자원부, 기획예산처 등과 이관절차 등 협의

○ 대학병원 관계자 의견 수렴

※ '05. 8월부터 국립대학교병원발전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정례화

○ **이관방안 확정 및 관련법령 제·개정 : '05. 8 ~ '06. 2**

- 복지부 이관 외에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련법령 제정 추진

※ 이와 관련된 구논회 의원 발의 법안 검토도 병행

○ **'06년도 : 시행준비단계**

- 연구비지원, 시설장비 확충 등 국립대병원발전계획 수립
- 공공보건의료사업 모델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시범사업 실시
-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'07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

○ **'07년도 : 본격시행**